

#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1. 29(목)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. 12. 05.

나. 제안자 : 이한구, 박영애, 조계자, 임정빈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4. 12. 05.

라. 상정일자 : 2015. 01. 29.(제221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이한구 의원
- 검토보고 : 왕동향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- 질의 및 토론
-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에 의해 규정된 국민의 의무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, 오랜 휴전상태로 인해 그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
-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가.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4조)

나. 병역명문가 우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수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는 병무청에서 「**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(훈령)**」(이하 “**운영규정**” 이라 한다.)에 따라 매년 병역명문가 찾기와 선양 및 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는 53가문으로 전국 병역명문가의 2.2%를 차지하고 있음.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차원의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이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### ○ 주요 내용으로

- **안 제3조와 제4조**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 홍보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

- **안 제5조**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등에서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두었음.

### ○ 주요 검토의견으로는

- **안 제2조 제1호**에서 “**병역명문가**”를 “3대(조부모와 그 손자·녀까지의 직계비속) 가족 모두가”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, **병무청 운영규정**에서는 “**병역명문가**”를 “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”로 정의하고 있는 바,

- 본 제정 조례안이 근거로 삼고 있는 운영규정 보다 병역명문가의 범위를 조모와 손녀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운영상 부적절한 면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,
- 동 조항 제2호에서 “예우대상자” 를 정의하고 있지만 이후 조문에서는 “예우대상자” 를 명시한 조문이 없고, 특히 안 제5조에서는 예우의 대상자를 “병역명문가”, “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” 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, 관련 용어가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- 병무청은 운영규정으로 “병역명문가” 를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“병역명문가 가족” 을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로 별도 정의하면서 우대 혜택이 가족까지 부여됨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
- 본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“병역명문가” 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정의하고 있지만, 이 경우의 “가족” 은 병역이행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고
- 안 제5조 제1항에서 우대 대상을 “병역명문가” 로 하고, 제2항에서 우대 대상 확인 방법을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으로만 명시하고 있어서, 우대 대상이 병역 이행자만인지 “병역명문가 가족” 까지를 포함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시행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우대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또한, 본 조례안이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및 위탁 운영 기관의 시설물 이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수요를 파악하고 개정하는 절차가 실현되어야 하는 바,
- 감면 또는 면제 대상 시설물의 결정과 관련 조례 소관 부서에 대한 홍보와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##### <유일용 위원>

○ 우대 혜택의 범위는?

⇒ 제2조제2호의 예우대상자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본인만 해당됨.

○ 병역명문가증을 받는 사람은?

⇒ 병역이행자만 받음.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본인만 혜택주고 가족까지 확대는 추후 검토할 계획임.

○ 제3조 규정은 강행규정임. 행정적 부담 요인은 없는가?

⇒ 지원범위가 크지 않고 지원계획도 처음 수립하면 이후 큰 변동요인은 없어서 부담은 크지 않을 듯 함. 또한, 제5조 우대 조항의 “병역명문가” 를 “예우대상자” 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.

##### <이영훈 위원>

○ 병역명문가를 정의하는 문구에 있어서 병무청 규정과 차이 있음.

⇒ 조모와 손녀를 더 포함하고 있지만 병무청에서도 운영은 여성 복무자를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없음.

##### <차준택 위원>

○ 손자·녀에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복무하지 않고 여성이 현역 복무 했어도 포함되지 않는가?

⇒ 포함되지 않음

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차준택, 유일용, 허 준, 이영훈 위원

## 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 (재석위원 4명, 찬성 : 4명, 반대 : 0명)

❖ 수정가결 내용

○ 안 제2조제1호에서 “3대(조부모와 그 손자·녀까지의 직계비속) 가족 모두가” 를 “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” 로 수정

○ 안 제5조 제1항에서 “병역명문가” 를 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” 로, “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” 을 “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” 로 수정

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 8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□ 붙 입

1.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3.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

##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에서 “3대(조부모와 그 손자·녀까지의 직계비속) 가족 모두가”를 “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에서 “병역명문가”를 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”로 하고,  
“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”을 “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 < 생 략 >	제1조 < 제정안과 같음 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병역명문가”란 <u>3대(조부모와 그 손자·녀까지의 직계비속)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서 각 지방병무청장(이하 “병무청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.</u>	1. ----- <u>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-----</u> ----- ----- -----.
2. < 생 략 >	2. < 제정안과 같음 >
제3조 ~ 제4조 < 생 략 >	제3조 ~ 제4조 < 제정안과 같음 >
제5조 ① 시장은 <u>병역명문가</u> 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<u>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.</u>	제5조 ① ---- <u>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-----</u> ----- <u>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-----</u> -----.
② < 생 략 >	② < 제정안과 같음 >
제6조 < 생 략 >	제6조 < 제정안과 같음 >

##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병역명문가”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서 각 지방병무청장(이하 “병무청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.
2. “예우대상자”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병역명문가 지원)**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·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홍보 및 예우)**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우대)**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



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